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26
----------	-------

발의연월일 : 2025. 12. 9.

발 의 자 : 박 정 · 김영환 · 소병훈
김태선 · 이용우 · 김정호
윤준병 · 송옥주 · 문정복
박홍배 · 김주영 · 이학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처리제(국가유산의 손상 부위에 대해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수한 화학물질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처리제를 추가함으로써 규제의 중복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보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위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보존처리제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적용 범위) ① 생활화학제 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 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을 적용한다.	제5조(적용 범위) ① ----- ----- ----- ----- -- . ----- ----- ----- -----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1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u>법률</u> 」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u>보존처리제</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